

선	기관의 장
람	

제 90호
2026년 5월 15일 (금)

차 례

공 포

화성시 규칙 제797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 고

화성시 공고 제2026-1934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남양6배수지 주변시설 개선공사)
 화성시 공고 제2026-1935호 화성시 공인 등록 공고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462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굴착(새술) 제2026-11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241호 도로지정공고[정남면 오일리 340-4번지]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138호 병점구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지정 신청 공고(병점구 삼성1로 6길27)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140호 부동산거래지연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141호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고 시

화성시 고시 제2026-498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무봉산 문화공원
 화성시 고시 제2026-49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안내 - 무봉산 문화공원(산림)
 화성시 고시 제2026-50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안내 - 무봉산 문화공원(공원)
 화성시 고시 제2026-501호 도로구간 변경고시

회									
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화성시장 권한대행 제1부시장 윤성진

2026년 5월 15일

화성시규칙 제797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종목의 설치·폐지 및 평가)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엘리트 체육 육성이나 시대 흐름에 맞는 종목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목 설치평가를 실시하고 조례 제21조에 따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조례 제13조에 따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을 폐지할 수 있다.

1. 별표 1의2에 따른 종목 성과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2. 예산감소 또는 종목 개편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종목 운영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종목 유지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화성시의 위상이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 ③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1. 종목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사항
2. 종목 설치평가에 대한 세부사항
3.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제1항제5호 중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인사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인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 중 “인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인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훈련일을”을 “훈련일, 훈련장소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근무상한연령) 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60세
2. 선수: 40세

② 단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일이 도래하기 전에 경
 기실적 또는 지도능력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3
 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임용기간은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3조제2항 중 “인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심의회회의 운영 등) 심의회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비밀의 엄수에
 관하여는 조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 고
등급점수 산정 시 생활체육대 회 입상실적은 제외

별표 4 중 “100,000원”을 “200,000원”으로, “8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가족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상일	대회명	세부종목	구분(개인/단체)	성적
입상 실적 (최근 2년 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종목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1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대한 종목 성과평가의 등급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책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 각 호의 근무상한연령에 이미 달하였거나 이를 초과한 단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2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기간은 당연퇴직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단원이 제2항에 규정된 연장기간을 도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기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익일에 당연퇴직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감독·코치 및 선수의 정원(제2조 관련)

종목 \ 구분	단원 계	감독	코치	선수
종목 계	147	11	17	119
사격	10	1	1	8
펜싱	25	1	4	20
육상	16	1	2	13
배구	19	1	2	16
수영	15	1	2	12
빙상	14	1	1	12
검도	8	1	1	6
씨름	9	1	1	7
배드민턴	11	1	1	9
소프트테니스	10	1	1	8
장애인 축구	10	1	1	8

비고

1. 코치는 선수를 겸할 수 있고, 코치 및 선수는 총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2. 펜싱부는 남녀 선수를 구분하여 독립적인 팀으로 운영하고, 훈련·대회참가 등을 실시한다. 이 경우 여자팀 정원은 코치 1명 및 선수 5명으로 한다.

종목 성과평가 기준·배점 및 등급(제2조의2제2항제1호 관련)

1. 평가시기 및 회수: 연 1회

2. 평가방법 및 배점

가. 평가방법: 종목 성과평가 기준과 감점기준 합산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종목 성과평가 기준	감점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 경기력(30점) ▪ 상대적 경기력(10점) ▪ 국제적 인정 종목성(5점) ▪ 종목 인프라 연계성(10점) ▪ 생활체육 연계성(5점) ▪ 시정 홍보성(10점) ▪ 예산투입 효율성(25점) ▪ 종목 운영관리(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5점) ▪ 제28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3점) ▪ 우수 영입선수가 계약기간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1점)

다. 세부 배점기준은 평가지침에 따른다.

3. 평가결과 등급

등급	S	A	B	C	D
점수구간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종목의 설치 및 폐지)</p> <p>①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성과평가 기준 및 배점은 별표 1의2와 같다.</p> <p>②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합리적 종목 운영을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의 폐지를 심의할 수 있다.</p> <p>1. 제1항에 따른 종목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하위 순위를 받은 종목</p> <p>2. 외부기관 종목타당성 평가 등에 의해 최하위 순위를 받은 종목</p> <p>3. 그 밖에 화성시의 위상이나 명예를 떨어뜨린 종목</p> <p>③ 인사위원회는 지역 엘리트 체육 육성이나 시대 흐름에 맞는 창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의 설치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p>	<p>제2조의2(종목의 설치·폐지 및 평가)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엘리트 체육 육성이나 시대 흐름에 맞는 종목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목 설치평가를 실시하고 조례 제21조에 따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조례 제13조에 따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목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을 폐지할 수 있다.</p> <p>1. 별표 1의2에 따른 종목 성과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p> <p>2. 예산감소 또는 종목 개편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종목 운영관리가 필요함에 따라</p>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종목 유지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화성시의 위상이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③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1. 종목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

2. 종목 설치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

3.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임용서류) ① 감독, 코치 및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병역사항 기재)

제4조(임용서류)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주민등록

6. ~ 9. (생략)

②·③ (생략)

제7조(등급조정 등) ① 단원의
등급은 별표 2의2에 따른 선수
평가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서 심사하여 조정한다.

② ~ ④ (생략)

제7조의2(감독 및 코치 평가)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를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치고
감독 및 코치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독 및 코치의 운
영 실적이 월등히 우수하거나
부진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호봉 이내에서
추가승급 또는 강등할 수 있
다.

-

6.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등급조정 등) ①

----- 위원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감독 및 코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회

-----.

③

----- 위원회

제8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우수 선수 영입비”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우수 선수에게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제9조의2(우수 선수의 영입) 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우수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선수 영입비(이하 “영입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고, 영입비의 10 퍼센트의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용어의 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 5 .

----- 위원회

제9조의2(우수 선수의 영입) ①

----- 위원회

----- .

②·③ (생략)

제10조(호봉획정)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우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년도 호봉획정 시 5 호봉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15조(훈련시간) ① 단원의 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준용하되, 단장은 훈련여건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상의 훈련시간 및 훈련일을 변경하여 훈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호봉획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훈련시간) ①

훈련일, 훈련장소

를

②·③ (생략)

제22조(임용기간의 연장) 선수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근무상한연령) 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60세
2. 선수: 40세

② 단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일이 도래하기 전에 경기실적 또는 지도능력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임용기간은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3조(직권면직)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서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략)

제2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원의 임용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징계 및 직권면직 결정에 관한 사항

2의2. 종목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장이 된다.

제23조(직권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회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심의회회의 운영 등) 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비밀의 업무에 관하여는 조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홍보담당관

2. 자치분권과장

3. 인사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그 밖에 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33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
이 지명한다.

<삭 제>

<삭 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남양6배수지 주변시설 개선공사)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1856-11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남양6배수지 주변시설 개선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 5. 15.

화 성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개요

가.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1856-1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 칭: 남양6배수지 주변시설 개선공사

2. 규모 및 면적(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결정	①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남양읍 남양리 1856-113 번지 일원	12,556	화성시 고시 제2004-224호 (2004.10.05.)	
시행	①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남양읍 남양리 1856-113 번지 일원	12,556		

3. 사업시행자 개요

법인의 명칭 및 대표	주 소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수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고향의봄길 36

4.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46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 편입토지조서

연번	위 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행정동	지 번				성 명	주 소	
합 계				12,556	12,556			
1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1856-113	수	10,689	10,689	화성시		
2	만세구 남양읍 신남리	199-5	수	1,867	1,867	화성시		

화성시 공인 등록 공고

「화성시 공인 조례」 제7조(공인의 신조, 개각) 규정에 의한 등록 공인을 같은 법 제11조(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화 성 시 장

1. 공인 등록일: 2026. 5. 15.

2. 공인 등록 사유

- 화성시 지명위원회 및 주소명정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장인 등록

3. 공인명 및 인영

- 등록: 2개
- 인영: 붙임 참고

【등록 공인】

공인명	인영	공인명	인영
화 성 시 주 소 정 보 위 원 회 위 원 장 인		화 성 시 지 명 위 원 회 위 원 장 인	

화성시 만세구 제2026 - 462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만세구청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
점용의 목적	도시가스 배관 매설	점용기간	2035.12.31.까지
점용의 장소	새솔동 263번지 일원 (새솔동 139-1,-2번지 앞)	점용면적	일시: 4.8㎡ 영구: 1.0㎡
점용물의 종류	차도 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1일
공사 방법	인력 및 장비	굴착 시 교통대책	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차도 굴착
점용자의 주소·성명	(주)스마트송산 정성진	그 밖의 사항	굴착(새솔) 제2026-11호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 5. 15.

화성시 효행구청장

1. 도로위치 :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오일리 340-4번지
2. 도로길이 : 57.63m
3. 도로너비 : 6m
4. 도로면적 : 590m²
5. 지정동기 :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오일리 340-4번지 건축신고
6.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7. 편입토지

(단위 : m²)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소유자	비 고
정남면 오일리	340-4	임야	748	590	158	이**, 강**	

8. 공고기간 : 영구
9. 공고방법 :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10.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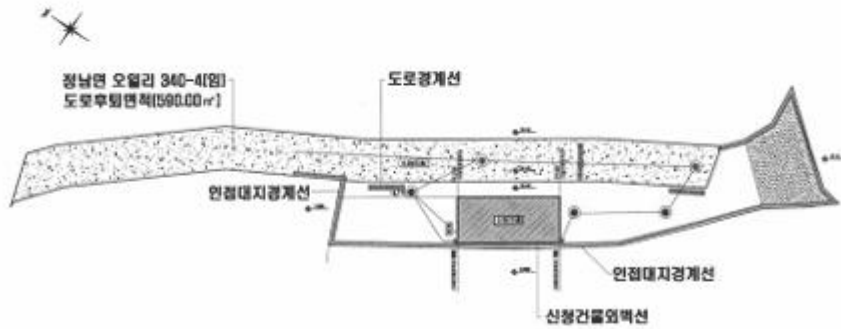
위 도로지정 공고 관련서류는 화성시 효행구청 도시건축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	효행구청 도시건축과	담당자 직/성명	건축관리팀 현보미	전화번호	031-5189-7699
------	---------------	----------	-----------	------	---------------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1 / 800



이해관계인의 관련 지번

공 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의 지칭의 취소)제1항 제5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7조의 2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해당 지정 취소 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칭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신청 접수를 실시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화 성 시 병 점 구 청 장



□ 공고 사항

소매인 구분	성명	영업장 소재지	상호	취소일자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허○○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삼성1로 6길27 1층 104105호 (반월동) <small>* 해당 장소는 인접 사용인사와의 거리 기준도 충족하여야함</small>	이마트24 화성삼성점	2026. 5. 13.

□ 소매인 지정 신청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5. 15(금) ~ 2026. 5. 26(화) 18:00

2. 대 상 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담배소매인 결격사유 -

-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칭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칭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3. 접 수 처 : 화성시 병점구청(병점구 병점로23) 부관2층 경제환경과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건축물대장
- 우선지정 자격 증명 서류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가족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이라 함은 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축건물(소유권 이전등기 미완료)인 경우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잔금원납증명서 신청 시 제출

5. 사실조사 :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 상태**여야 함

- * 개점상태의 기준 : 고정된 평면형 간판(일반적인 크기와 표기 형태이어야 하며, 접착형 시트지나 현수막 형태는 허용되지 않음), 현장 판매 가능한 상품 상태 (매대 비중의 50%이상 진열, 유통기한 준수), 계산기(포스기) 및 업소용 냉장고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6. 참고사항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결정
-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및 그 가족일 경우 우선지정 대상자이며, 동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천을 통하여 소대인 지정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 증명서류는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보완 불가

7. 추천 시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참가
- 추천 장소 : 추후 개별 알림.
- 추천 방법 : 접수완료 후 접수 순서에 의거 공개 추천
※ 대리인이 참가하는 경우 위임인(미참가자)의 신분증, 위임장 제출 (인감도장날인 必)

8. 기타 문의사항은 「담배사업법」 및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병점구청 경제환경과(☎031-5109-45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1. 접수 인정 기준

- 가. 마감시점 이전에 처리(담당)부서인 병점구청 경제환경과 담당자에게 신청서류 제출 시 접수 인정
- 나. 처리(담당)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민원실 접수 또는 정부24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오니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접수할 경우 처리(담당)부서 담당자를 꼭 경유하여 접수하기 바람.
- 다. 동일한 신청인(공동 명의 포함)이 공통된 내용의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1건만 인정하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우선지정대상의 신청에 대하여 중복신청을 금지함.

2. 보완·보정 사항

- 보완·보정이 가능한 사항과 보완·보정 완료 시기는 개별 사항에 따라 상이
 - 1) 마감시간 이후에는 우선지정대상자 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변경 불가 (최초 접수 그대로 인정)
 - 2) 우선지정대상자로 접수된 서류 중 우선지정대상자 증명서류를 누락한 경우 해당 공고 신청접수기간 내 보완·보정 가능

3. 신청접수기간 내 접수 현황에 대한 공포 및 확인 여부

-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해당 공고에 대한 접수 건수 및 상대방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공고 중에는 확인 및 안내 불가능

화 성 시 병 점 구 청 장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지연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화 성 시 병 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5. 15. ~ 2026. 5. 29.(14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사항

공시송달 제목	부동산거래지연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	
당사자	성명	한*진 (740727-1*****)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 , 4**호
대상 부동산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송산동 18*-* * 해태기간 ⇒ 3 개월 초과 * 실제거래가격 ⇒ 1 억 이상 5 억 미만(250,000,000 원) * 과태료 부과금액 ⇒ <u>2,000,000 원</u> * 가산금 ⇒ <u>60,000 원</u>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같은 법 제28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6. 5. 29. 이후에는 독촉장 발부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만일 납부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부동산 압류)할 예정이오며, 또한 가산금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의 최초 월 3% 가산금 및 최고 5년까지 증가산금(매월 1.2%)을 적용하여 징수하게 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관명	화성시 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 (☎ 031-5189-4107)
	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병점구청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보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화 성 시 병 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5. 15. ~ 2026. 5. 29.(14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사항

공시송달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보	
당사자	성명	박*호
	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번길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항(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38조 제2항(등록의 취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6. 5. 30. 이후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보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지정된 일시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청문장에 출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시거나, 청문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청문조서의 열람,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청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점구청 자치행정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정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청문일정	■ 일시: 2026.6.29.(월) 15:00 ■ 장소(청문장): 화성시 병점구청 소회의실(3층) ■ 지참물: 신분증, 의견진술서, 진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청문주재자: 병점구청 자치행정과 기획감사팀장 김영훈	

문의처	기관명	화성시 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 (☎ 031-5189-4107)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병점구청

고 시 문

화성시 고시 제2019-323호(2019. 07. 0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무봉산 문화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5. 15.

화 성 시 장

1.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 붙임
2. 공원 조성계획(변경) 도면 : 붙임
3. 열람장소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4. 문의사항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031-5189-6122)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개요

화성시 동탄구 중동 859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무봉산 문화공원 내 ‘무봉산 자연휴양림 카라반 설치 공사 등’ 추진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하고자 함.

2. 공원현황

시설 구분	공원명	위 치	결정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문화공원	무봉산 문화공원	화성시 동탄구 중동 859번지	13,830.2	화성시 고시 제2019-323호 (2019. 7. 4.)	

3. 공원조성 결정 조서

가. 공원조성 결정 총괄조서

구 분	시설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기)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바닥		연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3,830.2	13,830.2	-	535.83	535.83	907.58	907.58	200	319	119	100	100	-	
시설계	10,689.4	10,937.8	248.4	-	-	-	-	200	319	119	77.3	79.1	1.8	
시설	기반 시설	소계	2,621.5	2,615.6	-5.9	-	-	-	-	-	-	19.0	18.9	-0.1
		도로	2,621.5	2,615.6	-5.9	-	-	-	-	-	-	19.0	18.9	-0.1
		광장	-	-	-	-	-	-	-	-	-	-	-	-
	조경시설	1,963.5	1,407.5	-556	-	-	-	-	-	-	-	14.2	10.2	-4.0
	휴양시설	1,941.9	2,599.6	657.7	-	-	-	-	96	108	12	14.0	18.8	4.8
	유희시설	-	-	-	-	-	-	-	-	-	-	-	-	-
	운동시설	-	-	-	-	-	-	-	-	-	-	-	-	-
	교양시설	699.6	692.3	-7.3	535.83	535.83	907.58	907.58	-	-	-	5.1	5.0	-0.1
	편익시설	3,462.9	3,622.8	159.9	-	-	-	-	17	17	-	25.0	26.2	1.2
	관리시설	-	-	-	-	-	-	-	87	194	107	-	-	-
녹지 및 기타	3,140.8	2,892.4	-248.4	-	-	-	-	-	-	-	22.7	20.9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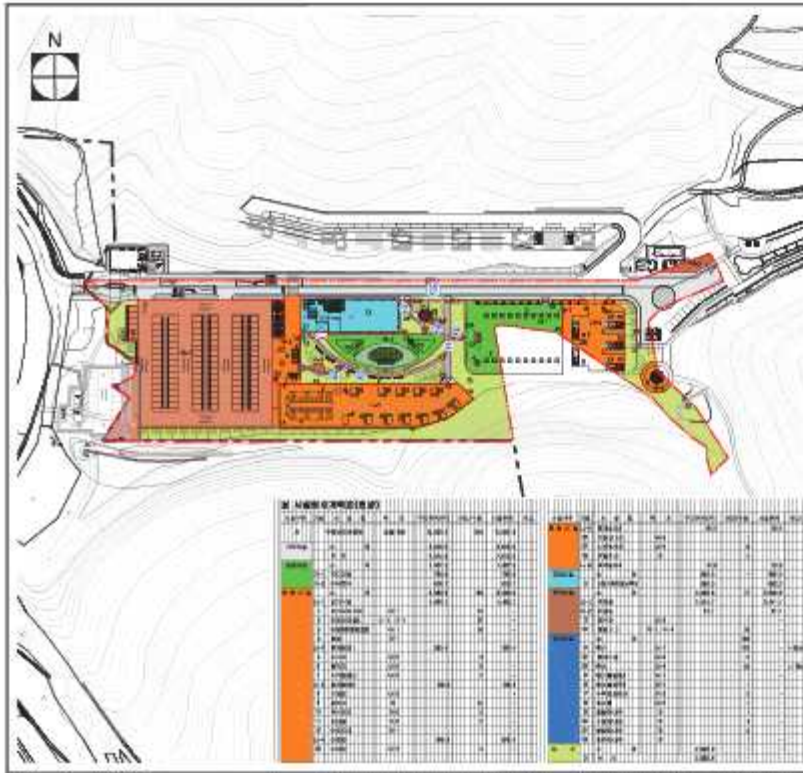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부호		시설명	부지면적(㎡)			규모/수량			구성비(%)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3,830.2	13,830.2	-	200	319	119	100.0	100.0	-	535.83	535.83	907.58	907.58	
	소계			10,689.4	10,937.8	248.4	-	-	-	77.3	79.1	1.8					
기반시설	소계			2,621.5	2,615.6	-5.9	-	-	-	19.0	18.9	-0.1					
	-	도로		2,621.5	2,615.6	-5.9	-	-	-	19.0	18.9	-0.1					
조경시설	소계			1,963.5	1,407.5	-556	-	-	-	14.2	10.2	-4.0					
	가-1	잔디마당		1,351.7	790.8	-560.9	-	-	-	9.8	5.7	-4.1					
	가-2	바닥분수		611.8	616.7	4.9	-	-	-	4.4	4.5	0.1					
휴양시설	소계			1,941.9	2,599.6	657.7	96	108	12	14.0	18.8	4.8					
	나-1	피크닉장		1,472.4	1,460.7	-11.7	-	-	-	10.6	10.6	-					
	-	1	피크닉파고라					13	13								
	-	2	야외테이블A					50	32	-18							
	-	3	야외테이블B (장애인결승)					2	18	+16							
	-	4	평상					1	1								
	나-2	휴게쉼터1		351.4	353.4	2	-	-	-	2.5	2.6	0.1					
	-	5	파고라					4	4								
	-	6	평의자					6	6								
	-	7	사각플랜터					2	2								
	나-3	휴게쉼터2		118.1	106.3	-11.8	-	-	-	0.9	0.8	-0.1					
	-	8	가제보					1	1								
	-	9	등의자					12	12								
	-	10	연식의자					2	2								
	-	11	파리솔					2	2								
	-	12	야외무대					1	1								
	나-4	야영장	신설		645.4	645.4					4.7	4.7	4.7				
		23	카라반					신설	5	5							
	나-5	휴게쉼터3	신설		23.2	23.2					0.1	0.1					
		26	조형파고라					신설	1	1							
	27	나뭇잎의자					신설	6	6								
	28	조형의자					신설	2	2								
나-6	휴게쉼터4	신설		10.6	10.6												
교양시설	소계			699.6	692.3	-7.3	-	-	-	5.1	5.0	-0.1	535.83	535.83	907.58	907.58	
	다	산림자원체험교육관		699.6	692.3	-	-	-	-	5.1	5.0	-0.1	535.83	535.83	907.58	907.58	소매점 23.18㎡ 포함
편의시설	소계			3,462.9	3,622.8	159.9	17	17	-	25.0	26.2	1.2					
	라-1	주차장		3,377.1	3,541.7	164.6	-	-	-	24.4	25.6	1.2					
	라-2	화장실		85.8	81.1	-4.7	-	-	-	0.6	0.6	-					
	-	13	음수대					1	1								
-	22	쿨링포그					16	16	16								

구분	부호		시설명	부지면적(㎡)			규모/수량			구성비(%)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관리시설	소계			-	-	-	87	194	107	-	-	-					
	-	14	웬스	-	-	-	67	123	56	-	-	-					
	-	24	블라드등	-	-	-	신설	5	5	-	-	-					
		25	웬스B	-	-	-	신설	45	45	-	-	-					
	-	15	웬스출입문A	-	-	-	1	1	-	-	-	-					
	-	16	웬스출입문B	-	-	-	1	1	-	-	-	-					
	-	17	수목보호호흡덮개	-	-	-	3	3	-	-	-	-					
	-	18	휴지통	-	-	-	7	7	-	-	-	-					
	-	19	종합안내판	-	-	-	1	1	-	-	-	-					
	-	20	시설안내판	-	-	-	4	4	-	-	-	-					
	-	21	방향안내판	-	-	-	3	3	-	-	-	-					
	-	29	정원안내판	-	-	-	신설	1	1	-	-	-					
녹지 및 기타				3,140.8	2,892.4	-248.4	-	-	-	22.7	20.9	-1.8					

다. 도로 결정 조서(변동없음)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437.2	423.1	2,621.5	2,615.6				
2	1	8.0	8.0	298.6	271.6	2,388.8	2,299.7	진입로	대상지 서측경계	대상지 동측경계	
3	1	3.0	3.0	6.4	6.1	19.4	18.9	연결로	소로3-2	잔디마당	
3	2	2.0	2.0	40.2	35.9	80.4	91.5	연결로	소로2-1	피크닉장	
3	3	1.5	1.5	74.9	65.8	112.4	128.9	연결로	산림자원 체험교육관	소로3-2	
3	4	1.2	1.6	17.1	17.6	20.5	34.3	연결로	소로2-1	바닥분수	
3	5	신설	1.6	신설	7.3	신설	11.9	연결로	휴게쉼터3	소로3-2	
3	6	신설	1.6	신설	18.80	신설	30.4	연결로	휴게쉼터1	소로3-3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조성계획승철도 변경

■ 조성계획승철도(현황)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면적	1,000,000	100	
승철도	500,000	50	
승철도	500,000	50	

■ 부속시설승철도(현황)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면적	1,000,000	100	
부속시설	500,000	50	
부속시설	500,000	50	

■ 승철도승철도(현황)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면적	1,000,000	100	
승철도	500,000	50	
승철도	500,000	50	

S = 1 : 600

0 10 20 50 100(m)

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실시계획 작성·고시

화성시 동탄구 중동 859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9-323호(2019. 7. 4.)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15.

화 성 시 장

1. 실시계획(변경)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동탄구 중동 859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

○ 명 칭 : 무봉산 자연휴양림 카라반 설치 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	무봉산 문화공원	문화공원	중동 859	13,830.2	화성시 고시 제2019-323호 (2019. 7. 4.)	
시행	-	무봉산 문화공원	문화공원	중동 859	645.4	-	

○ 실시계획 사유서

구 분	시설명	내 용	사 유	비 고
변경	무봉산 문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면적 A = 645.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내 카라반 설치 등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 성명 : 화성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서는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031-5189-2344), 공원조성과(031-5189-61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불입(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합 계		1필지		13,830.2	13,830.2			
1	중동	859	공원	13,830.2	13,830.2	화성시	-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조건

[무봉산 문화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개요

사업명칭	무봉산 자연휴양림 카라반 설치 공사
사업위치	화성시 동탄구 중동 859
사업규모	A = 645.4㎡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
사업시행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성명 : 화성시장(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절차, 지목변경 및 합필, 산지복구준공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시행령 별표5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사 배치기준]를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련부서와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예정일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실시계획 작성·고시

화성시 동탄구 중동 859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9-323호(2019. 7. 4.)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15.

화 성 시 장

1. 실시계획(변경)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동탄구 중동 859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

○ 명 칭 : 2026년 마을정원(무봉산 숲속 마을정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	무봉산 문화공원	문화공원	중동 859	13,830.2	화성시 고시 제2019-323호 (2019. 7. 4.)	
시행	-	무봉산 문화공원	문화공원	중동 859	691.2	-	

○ 실시계획 사유서

구 분	시설명	내 용	사 유	비 고
변경	무봉산 문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면적 A = 6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내 정원조성 등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 성명 : 화성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년 10월 31일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서는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031-5189-6121, 031-5189-61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불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합 계		1필지		13,830.2	13,830.2			
1	중동	859	공원	13,830.2	13,830.2	화성시	-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조건

[무봉산 문화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개요

사업명칭	2026년 마을정원(무봉산 숲속 마을정원) 조성사업
사업위치	화성시 동탄구 중동 859
사업규모	A = 691.2㎡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0. 31.
사업시행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성명 : 화성시장(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절차, 지목변경 및 합필, 산지복구준공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시행령 별표5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사 배치기준]를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련부서와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예정일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5일

화 성 시 장

- 고 시 일 : 2026. 5. 15.
-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고시내용 : 화성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구간 변경 : 2개 구간[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031-5189-16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조서 및 현황도 1부.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도면

구분	도로 위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기초 번호	변경 내용
			시점	종점					
변경 전	길	연창길	팔탄면 창곡리 1053-0	팔탄면 창곡리 299-0	162	3	20	30-1 → 30-18	1차종속 도로 연장
변경 후	길	연창길	팔탄면 창곡리 1053-0	팔탄면 창곡리 306-12	119	7	20	30-1 → 30-31	

도로구간 현황도



